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근거 마련 >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736)

2023.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근거 마련(안 제25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변재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3. 9. 26.

다. 회 부 일 : 2023.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 조성, 운용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콘텐츠 제작·유통·부가서비스 개발,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방송통신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간 이를 통해 급격히 성장해왔음.

그러나 ICT 기술 발전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행태변화 등으로 기존에 기금을 부담해온 방송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금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EU와 캐나다 등 방송통신 관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담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도록 하여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근거 마련(안 제25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 6.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5항-----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⑤·⑥(생략)	⑥·⑦(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 -----제5항----- ----- ----- ----- ----- ----- -----.
⑧(생략)	⑨(현행 제8항과 같음)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 ----- -----.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 ----- -----.
1. ~ 15.(생략)	1. ~ 15.(현행과 같음)
<신설>	1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16.(생략)	17.(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 ④(생략)	② ~ ④(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¹⁾,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²⁾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행법 제25조제3항을 근거로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고³⁾,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⁴⁾.
- 개정안은 이러한 분담금 징수 대상 범위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지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 관련 기금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 또한,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고 있는데,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취약계층 방송통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인터넷기업협회, 티빙, 웨이브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기금 분담금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4조⁵⁾에 따라 부과대상, 부과기준, 법적 타당성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등의 납부요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집행 가능성,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및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또한 기금의 용도에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장애인 등 요금감면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도,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 검토 필요 의견임.

○ 셋째, 인터넷기업협회, 티빙, 웨이브 등의 이해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격과 상이하다는 점,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수용곤란 입장임.

(인터넷 기업협회: 수용곤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가통신역무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요금감면의 실익이 적음.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티빙: 수용곤란) 법적 도입 취지에 공감하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격, 징수대상, 사용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OTT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고, 무리한 징수대상 확대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웨이브: 수용곤란) 포털 및 OTT 사업자의 경우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금에 따른 수입이 연관산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기금 집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유발 소지가 있음.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부가통신 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취약계층 방송통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과기부, 기재부 등이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